



기구 및 용기 · 포장의 기준과 규격 중 개정

1. 개정이유

다양한 용기 · 포장의 개발에 따른 민원인의 편의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통상마찰을 방지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가. 재질규격 중 합성수지계 재질규격에 폴리시클로헥산-1,4-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 (poly(cyclohexane-1,4-dimethylene terephthalate) : PCT)를 추가함

나. 재질규격중 합성수지계 재질규격에 에틸렌비닐알콜(ethylenevinylalcohol : EVOH)를 추가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식품위생법 제9조(기준및규격) 제1항

나. 규제심사 : 신설 · 강화 규제사항 없음

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협의 : 식품위생심의위원회(식품첨가물분과) 협의

마. 기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(붙임)

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2-70호

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구및용기 · 포장의기준 · 규격중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(표 1)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안 (안)
<p>2. 재질별 규격 1. 합성수지제 1. 합성수지제 1-1~1-35 (생략) <신설></p> <p><신설></p>	<p>2. 재질별 규격</p> <p>1. 합성수지제에 1-36 및 1-3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1-36. 폴리시클로hexan-1,4-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(poly(cyclohexane-1,4-dimethylene terephthalate) : PCT)</p> <p>1) 정의 폴리시클로hexan-1,4-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라함은 테레프탈산 또는 테레프탈산디메틸에스테르와 1,4-시클로hexan디메탄올의 중합물질을 50% 이상 함유하는 중합체를 말한다.</p> <p>2) 재질규격(mg/kg) (1) 납 및 카드뮴 : 각각 100 이하</p> <p>3) 용출규격(mg/l) (1) 중금속 : 1.0 이하(납으로서) (2) 과망간산칼륨소비량 : 10 이하 (3) 증발잔류물 : 30 이하 (4) 안티몬 : 0.05 이하</p> <p>1-37. 에틸렌비닐알콜(ethylenevinylalcohol : EVOH)</p> <p>1) 정의 에틸렌비닐알콜이라 함은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공중합체를 알콜화 하거나 가수분해하여 얻은 중합물질을 50% 이상 함유하는 중합체를 말한다.</p> <p>2) 재질규격(mg/kg) (1) 납 및 카드뮴 : 각각 100 이하</p> <p>3) 용출규격(mg/l) (1) 중금속 : 1.0 이하(납으로서) (2) 과망간산칼륨소비량 : 10 이하 (3) 증발잔류물 : 30 이하</p>

2002년 12월 16일

식품의약품안전청장

기구및용기 · 포장의기준및규격중개정

기구및용기 · 포장의기준및규격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☐